

**2017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 렬 · 직 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시 험 과 목	
합 계			53명			
제5회 임용 시험 (12.16)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일반)	29명	제 주 시 19 서귀포시 10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6과목 중 2과목 선택)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복지(장애인)	2명	제 주 시 1 서귀포시 1	
			일 반 토 목	12명	도일괄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10명	도일괄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이며, 100점 만점 5과목

※ 임용예정기관을 도 일괄로 모집한 인원은 결원이 있는 행정시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5과목, 100분(10:00 ~ 11:40)

### 3. 출제범위 관련

과 목	세부범위
사 회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선택 과목에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15번 항목 참조)

### 4.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나. 위탁출제 시험과목

시 험 명	과목수	위탁출제과목	위탁출제기관
제5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3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인사혁신처 (문제공개)

### 5.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경우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한 사람)

마. 자격(면허)증 제한

시 험 명	직 급	직렬(류)	자격증	비 고
제5회 임용시험 (12.16.)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3급 이상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현재 유효한 것

##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선발예정기관구분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 가. 선발예정기관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의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5년 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 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8.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은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접수기간: 10. 10.(화)~10. 16.(월)	필기시험	'17. 11. 10.(금)	'17. 12. 16.(토)	'18. 1. 24(수)
취소기간: 10. 10.(화)~10. 19.(목)	면접시험	'18. 1. 24(수)	'18. 2. 8.(목)	'18. 2. 12.(월)
장애인·임산부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 제출기간	10. 10.(화)~10. 19.(목) ※ 10. 19.(목)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 원서접수 취소 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9.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1522-0660

다. 응시수수료 :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가능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환불)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 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9급시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및 면접시험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시험에 응시하여 다른 사람의 합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2017.10.19.)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단,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추가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11. 장애인 초과합격제

- 가. 적용대상 : 장애인 구분 모집
-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12.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를 입력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선택과목은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조정전 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이면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전 점수와 조정점수 둘 다 4할 미만인 경우만 과락적용)
- (3) 원서접수 시 어학능력 성적을 포함한 모든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064-710-6814)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7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① 사회복지직렬

직렬	직류	자 격 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5%

② 기술직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일반직 8·9급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가산대상자격증 : 별도 첨부물 참고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10%범위에서 합산 가산되며, 동일 기술·기능 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3)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li> <li>·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li> <li>·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1급</li> <li>· 토 익(TOEIC) : 900점 이상</li> <li>·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li> <li>· 텡 스(TEPS) : 828점 이상</li> <li>·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li> <li>· 플 렉 스(FLEX):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li> <li>·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180점이상</li> <li>· 일본어능력시험(JPT) 8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이상</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li> <li>·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li> <li>·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2급</li> <li>· 토 익(TOEIC) : 850점 이상</li> <li>·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li> <li>· 텡 스(TEPS) : 779점 이상</li> <li>·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li> <li>· 플 렉 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li> <li>·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210점이상</li> <li>·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이상</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li> <li>·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3급</li> <li>·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준2급</li> <li>· 토 익(TOEIC) : 775점 이상</li> <li>·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li> <li>· 텡 스(TEPS) : 700점 이상</li> <li>·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li> <li>· 플 렉 스(FLEX):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li> <li>·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180점이상</li> <li>· 일본어능력시험(JPT) 6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00점이상</li> </ul>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한어수평고시(신HSK)인 경우 필기시험 1주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점 적용이 됨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4)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3% (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및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함

### 13.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http://www.moleg.go.kr))를 참고

###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만을 사용하고,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15. 기타사항 안내

### ○ 조정점수제란

#### ◆ 개요

- 선택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과목간 난이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 중 당해 수험생의 상대적인 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점수

#### 선택과목 특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관련)

#####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식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55조의3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55조의3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 과목과락 - 가산점은 합산하지 않음.

- 조정 전 점수와 조정점수 두 종류 모두가 40%미만인 경우에만 과락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064-710-6212, 6218)로 문의 바랍니다.